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3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1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1,811,358원 및 그 중 1,487,073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 24.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와 같이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피고의 부 C이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